

# 임업관련 세제 일부 개정

## 土超稅, 준보전임야 영림계획지 제외

**정** 부는 세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가운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산림관계 분야도 일부 개정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초세 시행령〉

◇준보전임야: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야(경사도가 21도 미만인 임야 등)중 토초세 시행 이전부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계획대로 시행중인 임야는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상속받은 임야 5년간 비과세: 현재 농지는 상속후 5년간 토초세 과세를 유예하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임야도 상속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 ◇기타 참고 규정

◎自耕농지로 인정하는 通作거리를 8km에서 →20km로 확대

거주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농지는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찬가지로 상속공제를 받는 자경농지의 범위도 통작거리 20km이내로 늘어난다.

◎공공 空地로 제공되는 토지는 토초세 비과세

건축법 등에 의해 공공空地(빈땅)로 제공되는 땅은 이같은 토지사용제한이 풀릴 때까지 토초세를 물리지 않는다.

현재는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도 3년간만 토초세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다.

## 회비납입 안내

### 계좌번호

○농협중앙회 : 031-01-231375

○국민은행 : 827-01-0037-647

한국독립가협회

권 오 진

# 나라꽃 무궁화 선양 유공자에 표창

**산** 립청은 무궁화의 증식보급 및 선양사업에 공이 많은 사람을 선발, 지난 12. 10 산림청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는 총 31명으로 대통령 표창 4명, 국무총리 표창 4명, 총무처장관 표창 10명, 산림청장 표창 13명인데 훈격별 수상자 명단은 별표와 같다.

## 무궁화 증식·보급 및 선양유공 수상자

훈격	구분	시도별	소속 (주소)	직급	성명
계		31			
대통령 표창		4			
	개인	경기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374-129	지방 임업기좌	박춘근
	"	"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금남리 310-4		정태범
공무원	충남	농림수산국 산림과	이용찬		
	단체	충북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65-13		광림기계(주)
국무총리 표창		4			
	개인	대구	대구직할시 동구 신천4동 497-42	지방 임업기좌	공명식
	개인	충남	충청남도 천안군 수서면 발산리 88		장석봉
공무원	경북	농림수산국 산림과	장필성		
	단체	부산	부산직할시 서구 부민동 3가 34-3 삼지빌딩 502호		한국무궁화 선양회 부산지회
총무처장관 표창		10			
	기관	광주	광주직할시 동구 계림동 505-900	지방 임업기사보 지방 임업기좌 지방 임업기좌 지방 임업기사 지방 임업기 방	광주직할시 흥천군청 임업시험장
	"	강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회망리 181		김종호
	"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동서학동 885		구정호
	공무원	서울	서대문구청 공원녹지과		김낙철
	"	부산	환경녹지국 녹지과		권진해
"	인천	환경녹지국 녹지과	안중걸		
	"	경기	부천시청 녹지과	김홍섭	
	공무원	강원	인제군청 산림과		
	"	전남	진도군청 산림과		

	"	경 남	진주시청 녹지과	임업기사 지방농림원	마장숙
산림청 장표	13				
	단 체	대 구	대구직할시 수성구 노변동 100		대구농림 고등학교 육 군 제1862부대 황 죽 마을
	"	강 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1리		김형덕
	공무원	전 북 인 천	전라북도 남원시 고죽동 양묘관리사업소	지 방 임업기원	진삼환
	"	광 주	동구청 건설과	지 방 임업기사보	김학배
	"	대 전	중구청 건설과	지 방 임업기사보	정광해
	"	경 기	광명시청 녹지과	지 방 임업기원	최광욱
	"	강 원	춘천군청 산림과	지 방 임업기사보	전희식
	"	충 북	농림수산국 산림과	지 방 임업기원	송홍근
	"	전 남 전 북	나주군청 산림과 임실군청 산림과	지 방 임업기원	오재운
"	경 북	상주군청 산림과	지 방 임업기 사	신병희	
"	경 남	산청군 신안면사무소	지 방 행정주사보	이상호	

## 法人篤林家에게도 山林事業費 補助키로

산림청은 그동안 造林 및 育林事業을 수행하면서 법인독립가를 비롯, 산업비림 등에 대하여는 국고보조를 제외시켜 왔으나 관계규정을 개정, 오는 새해 예산에서부터는 이를 해제키로 하였다.

최근년들어 조림투자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UN 환경개발회의등 세계 산림자원 보호

추세와 관련하여 국내 산림자원의 조속한 조성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비교적 산림을 많이 소유한 법인독립가, 산업비림, 조림명령에 의한 조림대상지를 비롯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공유림에도 조림 및 육림사업에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